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모아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저축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핀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전에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1)

③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서명 또는 인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현금이나 곧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저축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저축은행은 부기금액과 상관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 저축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저축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저축은행이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저축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축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자) ①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저축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저축은행은 예금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저축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9.27.]

제10조(지급이나 해지청구)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핀패드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

②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이자를 찾을 때는 그 약관 또는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저축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열살·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②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저축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저축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개정 2013.5.31>

②저축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외에 저축은행이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저축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②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저축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저축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저축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예금의 비밀보장) ①저축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저축은행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및 기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예금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예금주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예금주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5.31>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주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예금주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1조(약관적용의 우선순서) ①저축은행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③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저축은행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위법계약의 해지) 거래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Gold-Bar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Gold-Bar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고객과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 쓰리엠(이하“쓰리엠”이라 함)을 대리하여 Gold-Bar를 판매 또는 매입하는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함)간에 이루어지는 Gold-Bar의 매매거래에 적용합니다.

제2조 Gold-Bar 매매대행의 개요

1. 저축은행은 쓰리엠을 대리하여 고객에게 Gold-Bar를 판매(이하 “판매대행거래”라 함)하거나,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판매대행한 Gold-Bar를 쓰리엠을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이하 “매입대행거래”라 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Gold-Bar 판매대행거래 또는 매입대행거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쓰리엠과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3조 Gold-Bar 의 정의 및 종류

1. 이 약관에서 Gold-Bar란 쓰리엠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주조하여 통용되고 있는 실물형태의 금으로 제조사에서 제조하고, 판매사(쓰리엠)에서 순도 99.99%(999.9%) 및 질량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저축은행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가능한 금을 말합니다.
2. 저축은행에서 매매가 가능한 Gold-Bar의 종류는 저축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Gold-bar의 중량 별 판매단위를 말합니다.

제4조 대상고객

저축은행은 실명이 확인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법인, 미성년자 및 대리인 거래불가)에 한 하여 Gold-Bar의 판매대행거래 또는 매입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에 의해 가능합니다.

제5조 거래장소

고객은 저축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에서 Gold-Bar 매매대행거래를 합니다. 저축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은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을 변경할 경우 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제6조 매매대금의 정산

고객은 본인이 예금주인 저축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통해 Gold-Bar의 매매대금(고객 매입 시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거나, 수취합니다.

제7조 매매가격의 결정

1. 기준가격의 결정

가. 기준가격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금 1g(그램)당 원화가격이며, 판매사(쓰리엠)는 국제금시세와 환율 변동에 따라 수시로 기준가격을 고시합니다.

※ 기준가격

기준가격[원/g] = 국제금시세 (\$/T.oz) ÷ 31.1034768 (g/T.oz) × 환율(원/\$)

나. “가”호에서의 기준가격은 고객의 거래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며, 거래시점이란 저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입(매도)신청서를 판매사(쓰리엠)에 접수하여 판매가격이 산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다. “가”호에서의 “국제금시세”란 거래시점에 판매사(쓰리엠)의 홈페이지(www.exgold.co.kr)에 고시되는 1트로이온스 당 미달러화 표시가격을 말합니다.

라. “가”호에서의 “환율”은 거래시점에 판매사(쓰리엠)의 홈페이지(www.exgold.co.kr)에 고시되는 미달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2. 매매가격의 결정

가. 고객이 Gold-Bar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매매가격이라고 합니다.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나. 매매가격은 고객이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고객이살때] 판매가격 : 기준가격(원) × Gold-Bar 중량(g) × (1+판매수수료율)

[고객이팔때] 판매가격 : 기준가격(원) × Gold-Bar 중량(g) × (1-매입수수료율)

다. “나”호에서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과 매입수수료율은 Gold-Bar 중량별로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라. 고객과의 매매시에 적용되는 최종 판매(매입)가격은 “나”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원 미만 단위에서 절사하여 적용됩니다.

마. “다”호의 수수료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부가가치세 납부

1. 고객이 Gold-Bar를 매입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2. 제1항의 부가가치세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판매가격 (고객의 매입가격) × 10%

제9조 Gold-Bar 판매대행 절차

1. 고객이 저축은행을 통하여 Gold-Bar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에서 정한 매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고객은 신청서 작성과 함께 판매가격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저축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은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명의로 모아저축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서 동 금액을 인출합니다. 이때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정한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3. Gold-Bar의 판매대행 거래는 고객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된 시점에 계약은 체결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거래를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4. 저축은행은 판매대행 거래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Gold-Bar 실물을 교부합니다.

5. 저축은행은 Gold-Bar 실물이 거래 영업점에 도착한 날,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고객에게 Gold-Bar 수령을 통지합니다.

제10조 Gold-Bar 매입대행 절차

1. 고객이 저축은행을 통하여 Gold-Bar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보증서에 의해 저축은행이 판매대행 거래한 Gold-Bar임이 확인되고, Gold-Bar의 시리얼 넘버 및 포장 케이스가 훼손되지 않고,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저축은행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입대행 거래를 합니다.

2. 고객이 저축은행을 통하여 Gold-Bar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고객은 신청서 작성과 함께 Gold-Bar 실물을 저축은행에 인도해야 하며, 저축은행은 제7조에 따라 산출된 매입가격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실물 인수에 대한 저축은행이 정한 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4. Gold-Bar의 매입대행거래는 고객 요청에 의해 저축은행이 Gold-Bar 실물을 인수하고 매입가격이 산출된 시점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인도받은 Gold-bar를 쓰리엠에 전달하며, 쓰리엠은 Gold-Bar의 품질보증서, 시리얼 넘버 및 포장케이스가 훼손되지 않고,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합니다.

6. 저축은행은 쓰리엠으로부터 받은 Gold-Bar 실물 품질검사에 대한 매입승인여부를 즉각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매입승인일 경우 매입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입가격을 입금하며, 매입거절일 경우 매입거절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매도를 신청한 저축은행 영업점을 통해 Gold-bar 실물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11조 유의사항

1. Gold-Bar 실물보유는 국제금시세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Gold-Bar의 매매가격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시간 변동되므로 고객이 상담한 시점에 조회한 가격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Gold-Bar의 매매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

4. 저축은행은 쓰리엠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고객의 매매신청이 접수된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도일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5. 저축은행은 품질보증서, 시리얼넘버 및 포장케이스가 훼손되거나, Gold-Bar의 외형이 손상되어 위/변조가 의심되는 Gold-Bar에 대하여는 매입대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과 쓰리엠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되거나, 쓰리엠이 해산, 폐업, 영업정지, 영업양도, 관련 법령의 개폐 등으로 저축은행이 Gold-Bar 매매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Gold-Bar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7. 저축은행은 제6항에서 정한 업무 종료사유 중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됨으로서 Gold-Bar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하는 때에는 업무종료일 1개월 전부터 한달간 아래 각 호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가. 저축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다.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

제12조 면책사항

1. 저축은행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저축은행은 전쟁, 천재지변, 전산장애, 정전,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Gold-Bar 매매대행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저축은행은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매입대행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제11조 제5항, 제6항의 사유로 저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Gold-Bar를 매입대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고객이 최초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저축은행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객이 이러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저축은행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저축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고객에 제4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관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개별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과 저축은행 사이의 거래에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② 약관 변경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이를 서면·전자우편 등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 2018.3.7>

제14조 예금자 보호

Gold-Bar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조정

1. 고객은 Gold-Bar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